성주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사유

○「지방재정법」 일부개정(개정 2014. 5. 28.)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지속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환경단체 등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내용 명시(안 제24조)

- 자연환경보전활동 및 생태계보호활동
- 하천관리 및 수생식물 조성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6조,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57조

나. 예산조치 : 12,000천원 정도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 5. 28. ~ 6. 16.)
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마.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바.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 6. 12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환경관련 단체 등의 지속적인 환경보전 활동 및 생태계보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시코자하는 것으로서,

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
- 안 제24조제2항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에 자연환경 보전활동 및 생태계 보호활동, 하천관리 및 수생식물 조성에 관한 활동을 신설하여 환경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내용을 신설 명시하고 있습니다.

○ 상위법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 과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사유

○「지방재정법」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클린성주 친환경농촌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클린성주 친환경농촌만들기 추진 협의체에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내용 명시(안 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
나. 예산조치 : 20,000천원 정도
다. 입법예고 : 2015. 5. 28. ~ 6. 16.(의견없음)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마. 규제심사 : 해당사항없음
바.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 6. 12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클린성주 친환경 농촌만들기 운영 및 지원 사업의 구체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클린성주 만들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성주의 이미지를 제고 하기 위한 것으로서

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
- 안 제19조(행·재정적 지원)에 깨끗하고 쾌적한 들녘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 등 클린성주 만들기를 위한 활동, 클린 성주 사업 홍보 및 군민의식 개혁과 전국 확산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에 필요한 지원, 들녘환경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, 환경오염행위 계도 및 지도 등 환경지도자 책무에 필요한 사업을 신설 명시 하였습니다.

○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